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4월 12일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임용권 중 일부를 지방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소방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인사권 확보와 위임사무의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중 지방5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

○ 도지사 관장사무 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조정

- 현행 48개 단위 사무 → 4개 단위 사무로 축소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사무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임용권은 의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지사가 전권적으로 임면하여 왔으나 '93.12.27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권 중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지방5급이하의 의회내 전보권은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토록 하려는 내용과 소방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지사의 관장사무 중 현행 48개 단위 사무를 4개 단위 사무로 축소조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으로써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으로는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조문 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 및 소방서장” 에게를 “시장, 군수, 증명출장소장,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및 소방서장” 에게로 확대 명시하고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중 지방 5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 의회내 자율권을 부여 함과 아울러 방호과 소관의 위임 사무인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권, 위험물제조소 등의 승계, 예방규정의 인가권,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사용정지명령권 등의 사무를 신설개정하고 종전의 단서조항인 방호과소관 단위 사무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인사권 확보와 위임사무의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